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3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지피씨알

2. 조치내용

□ **(증권발행제한)** 6개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’21.2.26. 73인에게 전환우선주 245.4억원(1,168,370주)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, 제132조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, 제138조 제1호